

제20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

제 1 차 총무위원회 (2014. 12. )

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 
검 토 보 고 서

총 무 위 원 회  
전문위원 정규창

# 화물공영차고지 주변 잔여부지 매입 검 토 보 고 서

## 1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4. 11. 20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4. 11. 21

## 2 제안이유

가. 경남 서북부권 물류단지 네트워크 구축과 화물자동차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중인 「거창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」 추진에 따른 주변 잔여부지를 매입하기 위함

## 3 취득재산 현황

(단위:㎡, 천원)

구분	재산종별	재 산 의 표 시			기준 가액 (공시지가)	취득 시기	취득 사유	재 산 소유자
		소 재 지	지목	면적				
계		6필지		2,574	171,900			
취득	토지	거창읍 대평리 979-2	답	226	14,400	2015	공영차고지 주차면적 부족에 따른 추가확보	이순이
		거창읍 대평리 998-2	답	518	35,800			정현석
		거창읍 대평리 998-1	답	393	34,300			이구섭
		거창읍 대평리 997-2	답	567	36,700			정현석
		거창읍 대평리 980-2	답	349	14,900			이근정
		거창읍 대평리 981-2	답	521	35,800			김영순

**4****관련법규와 조례**

- 가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
- 나.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,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

**5****검토의견**

- 가.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잔여부지 중 공특법에 의한 잔여지 불부합지역에 대한 매입 및 활용을 통한, 부족한 화물공영차고지 주차공간 확보 계획으로서,
- 나. 공영차고지와 88고속도로 사이에 끼어 맹지화 되는 농지소유자들의 매입요구와 향후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군비를 확보하여 자투리 토지 전체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추가확보(증 20면)하고자 하는 것임
- 다. 따라서, 공영차고지의 부족한 주차공간 추가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인 잔여부지 매입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

# 치유의 숲 조성사업 검 토 보 고 서

## 1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4. 11. 20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4. 11. 21

## 2 제안이유

- 가. 치유의 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중간점검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내 편입필지 및 면적 조정, 대상부지 취득 시기를 변경코자 함

## 3 취득재산 현황

(단위:㎡, 천원)

구분	재산종별	재 산 의 표 시				기준 가격	취득 및 변경 시기	취득 및 변경사유	재 산 소유자
		소 재 지	지 목	당 초 면적	변 경 면적				
계				44,321	753,086	132,101			5명
취득 및 변경	토지	가조면 수월리 산15-8	임	28,329	5,784	1,807	2015	취득면적 변경(사업계 획 변경)	표주숙외1
		가조면 수월리 산16	임	15,000	747,074	129,990	2015		용당소마을회 외5
		가조면 수월리 산25	임	595	595	181	2015		차정수
		가조면 수월리 산27	임	397	397	123	2015		정규언

**4****관련법규와 조례**

- 가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
- 나.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,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

**5****검토의견**

- 가. 가조면 수월리 산 16번지 등 4필지에 당초 계획면적 44,321㎡로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부지매입 면적 753,086㎡로 계획하게 되었음
- 나.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향노화힐링랜드 조성 계획 방침에 따라,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중에 있으며, 치유의 숲 조성사업 대상지인 수월리 산 16번지 등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고시하고 2015년도 경상남도 및 산림청에 사업 신청 계획임
- 다. 따라서,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자연휴양림 지정시 대상토지에 대한 취득계획수립이 동반되어야 함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

# 희랑대사 생가복원 및 우륵터 정화사업 부지매입 검 토 보 고 서

## 1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4. 11. 20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4. 11. 21

## 2 제안이유

- 가. 희랑대사의 출생지와 우륵의 출생지 일원 부지를 매입하여 희랑대사 생가복원과 우륵터 사당건립 사업 준비

## 3 취득재산 현황

(단위:㎡, 천원)

구분	재산 종별	재산의 표시			기준가격	취득 시기	취 득 사 유	재 산 소유자
		소 재 지	지목	면적				
취득	토지	소 계		916	22,900	2014 ~2015	생가복원 및 정화사업 부지매입	
		주상면 성기리 1257	답	93	1,813			김재홍외 1
		주상면 성기리 1258	답	1,345	28,917			"
		주상면 성기리 1261	대	162	7,371			백낙영
		가조면 석강리 109	임	545	13,352			최재상외 2
		가조면 석강리 110	전	916	22,900			"

**4****관련법규와 조례**

- 가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
- 나.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

**5****검토의견**

- 가. 거창군에 소재한 각종 유적을 복원, 정비하여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·관리로 역사관광 자원화로 지역경제 등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,
- 나. 향토문화 사료를 후대에 보존·전승하기 위하여 신라말 고려초 승려인 희랑대사의 생가터를 복원하고 생초마을 우륵터에 사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
- 다. 따라서 주상면 성기리에 소재한 부지와 가조면 석강리에 소재한 부지를 매입하여 희랑대사 생가복원 및 우륵의 출생지에 사당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

# 일반재산 매각 검 토 보 고 서

## 1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4. 11. 20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4. 11. 21

## 2 제안이유

가.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통하여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코자 함

## 3 매각재산 현황

(단위:㎡, 천원)

구분	재산종별	재 산 의 표 시			기준가격	매각시기	매각사유	재 산 소유자
		소 재 지	지목	면 적				
계				28,721	75,938			
매각	토지	거창읍 장팔리 1185-1	유지	2,493	11,289	2014	보존부적합 (소류지 용도폐지)	거창군
		거창읍 장팔리 1186-1	유지	1,438				
		거창읍 장팔리 1187-1	유지	2,238				
매각	토지	주상면 거거리 산78-3	임야	2,481	3,032	2014	보존부적합 (소류지 용도폐지)	거창군
		주상면 거거리 산79-1	임야	8,811				
		주상면 거거리 산81-1	임야	2,229				
매각	토지	거창읍 동변리 952-1	답	4,516	33,779	2014	보존부적합	거창군
매각	토지	북상면 갈계리 1109-3	전	4,213	27,838	2015	보존부적합 (기업유치)	거창군
		북상면 갈계리 1109-7	임야	72				
		북상면 갈계리 1109-8	임야	230				

**4****관련법규와 조례**

- 가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
- 나.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,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

**5****검토의견**

- 가. 상기 10필지 토지는 소류지 용도폐지 보존부적합 토지(6필지, 14321m<sup>2</sup>)와 승강기 기업유치를 위한 보존부적합 토지(3필지, 27,838m<sup>2</sup>) 및 기타 보존부적합 토지(1필지, 33,779m<sup>2</sup>)의 일반매각 계획은 보존부적합 재산으로서 매각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됨

# 월천권역 종합정비 사업 검 토 보 고 서

## 1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4. 11. 20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4. 11. 21

## 2 제안이유

가.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일반농산  
어촌개발사업인 월천권역 종합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계획내 편입  
되는 국유재산(경찰청) 보상협의로 등가이상의 관사 5가구 이상을  
교환하기 위하여 사유시설 매수하여 교환코자함

## 3 취득재산 현황

가. 1취득재산의 표시(취득후 교환매각)

(단위:㎡, 천원)

구분	재산 종별	재 산 의 표 시			기준가격	취득 시기	취득 사유	재 산 소유자
		소 재 지	지목	면 적				
취득	집합건 물	대평리 1187번지 302호외 4건	대		감정평가액 이하 수의 계약으로 진행	2014	월천권역 종합정비사업 조성사업	김무중외 4인

나. 취득재산의 표시(교환후 사업편입)

(단위:㎡, 천원)

구분	재산 종별	재 산 의 표 시			기준가격	취득 시기	취득 사유	재 산 소유자
		소 재 지	지목	면 적				
계					263,397			

교환	토지	서변리552-2	대	1,603	183,811	2014	월천권역 종합정비사업 조성사업	국 (경찰청)
	건물	서변리 552-2		1층 88.14	24,385	2014		
	건물	서변리 552-2		3층 154.80	46,440	2014		
	지장물	서변리 552-2		나무등	8,761	2014		

#### 4 관련법규와 조례

- 가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
- 나.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,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

#### 5 검토의견

- 가. 월천권역 종합정비사업지구내 편입되는 국유재산(경찰청)을 매입해야 하는 것으로서,
- 나. 국유재산(경찰청)은 구 월천파출소로서 현재 관사로 활용되고 있어 등가이상의 관사용 5가구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보상 협의로서 향후 사유시설을 매수하여 교환하여야 함
- 다. 따라서,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정한 사유시설을 매입 하여 교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